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3,741,677	17,512,250
일반회계	574,800,569	17,244,017
특별회계	8,941,108	268,233
기타특별회계	8,941,108	268,233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170,100	5,103
건축진흥특별회계	140,000	4,20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801,559	24,047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31,754	36,953
드림빌특별회계	1,555,984	46,68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60,528	7,816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01,993	3,06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1,500	4,5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27,690	135,83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34,19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